인천 송도국제도시(RC-4블록) 호반베르디움 입주자모집공고

※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,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.

■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4.04.29입니다. (청약저축전즈의 기간, 나머,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)

■ 당 아파트는 2007.3.1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되는 분양가상한제 민영주택으로* 무주택기간, 부양가족수,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자율 선정하는 「청약가점제」가 적용됩니다.

■ 본 아파트는 전related 주택법 분화정책을 위해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청약 기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■ 유의사항 및 계약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

3순위 청약자의 편리를 위하여 인터넷청약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청약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, 청약 이전에 인터넷청약 기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지정에 따라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이므로 청약 이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■ 본 아파트는 전related 주택법 분화정책을 위해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청약 기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■ 유의사항 및 계약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18조 개정(2011.3.15)으로 입주자 선정 및 동·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.(단,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방식은 사업주체가 당첨자, 동·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)

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우선 청약자는 주택에 세대주 또는 세대원 전원이 해당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로 이전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가장 긴 자부터 우선적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, 같은 거주기간 내에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.

■ 본 아파트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 위치하는 관계로 택지개발지구로서 청약 순위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%를 초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송도국제도시 및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(2014.04.29) 현재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사업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, 나머지 50%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며, 동일 순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거주자 우선 선정할수 결과 미달 세대는 수도권 지역거주자에게 공급하고, 수도권 지역 거주자 선정할수 결과 미달 시에는 전국에 있는 청약자를 대상 으로 청약 및 계약을 배분하여 공급하고, 수도권 지역 거주자 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 할 때 지역별 세대수 배정 시 소수점 이하 발생 시에는 전국에 있는 청약자를 대상으로 청약 및 계약을 배분하여 공급하고, 수도권 지역 거주자 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 할 때 지역별 세대수 배정 시 소수점 이하 발생 시에는 전국에 있는 청약자를 대상으로 청약 및 계약을 배분하여 공급합니다.

■ 청약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■ 고령자와 장애인 1순 우선배정

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1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(2014.04.29)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중 주택공급신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우선배정 대상자 중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단, 입주자가 많은 경우 다른 종류의 입주자모집공고문 1부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함께 접수하여야 해당 청약에 배정 우선 배정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청약접수 시 주택공급신청자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따른 주택공급신청서 및 동·호수 배정 등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.(단,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방식은 사업주체가 당첨자, 동·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)

■ 청약자격 판단을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간주하여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기간을 산정

■ 본 아파트는 「주택법」 제38조에 따른 주택공급을 받으려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(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, 경기도) 지역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6회 이상인 분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

■ 청약자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■ 고령자와 장애인 1순 우선배정

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1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(2014.04.29)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중 주택공급신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우선배정 대상자 중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단, 입주자가 많은 경우 다른 종류의 입주자모집공고문 1부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함께 접수하여야 해당 청약에 배정 우선 배정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청약자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최초 입주 시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2조 제1항에 따라 주택공급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은 주택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전산정보 검색에 동의하셔야 합니다.

■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 청약 및 계약이 불가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주택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전산정보 검색 결과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약 및 계약이 가능